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
(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개정 제안된 규칙 관련 공청회 및 의견 개진 기회 통지

개정 제안된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뉴욕시 사회 복지 서비스부/인적 자원 관리국 (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DSS/HRA)은 Access-A-Ride 보조교통 수단 이동을 포함한 Fair Fares 프로그램에 적용될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진행됩니까? 사회 복지 서비스부/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은 개정 제안된 규정 관련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코로나 19 로 인해 공청회는 WebEx 에서 원격으로 **2020년 9월 3일 오전 11:00** 에 개최됩니다. 공청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646- 992- 2010 번으로 전화
안내가 나오면 액세스 코드 129 778 6784 를 입력합니다

- 인터넷 영상 및 오디오:

<https://nyc-dss.webex.com/nyc-dss/j.php?MTID=m419df96e8aa8f58273ddf94bedb3d760> 에 접속하십시오

안내가 나오면 다음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회의 번호: 129 778 6784

비밀번호: FairFares

개정 제안된 규칙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개정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정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를 통해 HRA 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서면 의견서를 NYCRules@hra.nyc.gov 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 줄에 "Fair Fares"를 넣어 주십시오.
- 우편. 다음 주소로 의견을 보냅니다.

HRA Rules
c/o Office of Legal Affairs
150 Greenwich Street, 38th Floor
New York, NY 10007

본인이 Fair Fare 관련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 팩스. 917- 639- 0413 번으로 의견서를 팩스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목 줄에 “Fair Fares Rule”을 넣어 주십시오.
- 공청회에서의 발언. 929-221-7220 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9 월 2 일 당일 또는 그 전에 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통해 공청회 의견 개선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등록 순서대로 발표하게 되며 2 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의견서 제출 마감일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20 년 9 월 3 일입니다.

공청회 참석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청취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숙박 시설**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NYCRules@HRA.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929-221-7220 번으로 전화를 통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2020 년 8 월 20 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제안된 규칙과 관련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개정 제안된 규칙에 관해 온라인으로 제시된 의견은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짧은 시일 내에 개정 제안된 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모든 의견, 서신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 구두로 전달된 모든 의견의 사본을 HR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본 HRA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뉴욕시 헌장 제 603 절 및 1043 절과 뉴욕주 헌법 제 7 항에 의거하여 HRA 는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HRA 의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규정은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안된 규칙이 HRA 의 규정 의제에 포함됩니까? 해당 개정 제안된 규정은 HRA 가 가장 최근의 규정 의제를 발표할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규정 입안 과정은 어떤 법률을 따릅니까? 새로운 규정 입안 또는 개정 시, HRA 는 반드시 뉴욕시 헌장 1043 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사항 역시 뉴욕시 헌장 1043 절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개정 제안된 규정의 배경 및 목적

뉴욕시 공정 요금 프로그램은 뉴욕시 저소득 거주자들에게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요금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은 작년 말 뉴욕시 사회 복지 서비스부(DSS/HRA)가 시행을 공포했습니다.

이제 DSS/HRA 는 뉴욕시 교통 공사(New York City Transit)와 협력하여 Access-A-Ride 보조교통 수단 이용 시에도 Fair Fares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Access-A-Ride 고객들에게 올 여름 초에 Fair Fares NYC 지원 방법 및 자신의 DSS/HRA Fair Fares NYC 와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Access-A-Ride 계정을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제까지 약 700 여 명의 Fair Fares 고객들이 계정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비록 COVID-19 로 인해 Access-A-Ride 보조교통 수단 고객들에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과금이 재개되는 대로 고객 여러분께 본 할인 혜택이 적용될 것입니다.

현재 Fair Fares 규정에서는 Fair Fares 할인이 “뉴욕시 교통 공사(NYCT)가 운영하는 지하철 및 지역 버스 노선, 그리고 DSS/HRA 가 NYCT 의 컨설팅을 통해 지정한 기타 이동 수단”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규정 개정안이 꼭 Fair Fares 가 Access-A-Ride 이동을 포괄하도록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DSS/HRA 는 해당 규정에 Access-A-Ride 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개정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MetroCard 는 Access-A-Ride 이용 시 사용되지 않으며 One Metro New York (OMNY)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MetroCard 를 교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Fair Fares MetroCard”라는 명칭을 “Fair Fares 할인”이라는 더욱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경
- (2) “연방 총수입”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총수입”으로 변경
- (3) 본 규정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의 삭제

밑줄 표시된 부분이 신규 조항입니다. 삭제된 텍스트는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전문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제 12 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 1 절.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12-01 항의 하위 조항 (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도시 기관”은 뉴욕시 행정법 타이틀 1 1-112(1)항에 정의된 도시 기관을 의미한다]
“Access-A-Ride”는 뉴욕시 교통 공사(NYCT)가 NYCT의 고정 경로 버스 및 지하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보조교통 수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2.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12-01 항의 하위 조항 (c) 및 (d)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 “Fair Fares NYC 이용 약관” 또는 “이용 약관”은 DSS/HRA와 뉴욕시 교통 공사의 양해 각서에 따라 지원자가 [FFM] FF 할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수락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데 동의해야 하는 이용 약관을 의미한다.

(d) “Fair Fares NYC [MetroCard] 할인” 또는 [“FFM”] “FF 할인”은 본 장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 이동 방식에서의 유자격자에 대한 할인을 [유자격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MetroCard(또는 MetroCard를 계승하는 모든 카드들)] 의미한다.

§ 3.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12-02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02 일반.

[DSS/HRA는 Fair Fares NYC를 운영하며 본 장에 의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참여자는 뉴욕시 교통 공사(NYCT)가 운영하는 지하철 및 지역 버스 노선, 그리고 DSS/HRA가 NYCT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 기타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데 Fair Fares NYC MetroCard를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반값 또는 승차당 요금 지불, 7일 또는 30일 요금, DSS/HRA가 향후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기타 요금 유형에 따라 요금 지불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시행은 기금 모금 가능 여부에 따른다.]

(a) DSS/HRA는 Fair Fares NYC를 운영하며 본 장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참여자는 뉴욕시 교통 공사(NYCT)가 운영하는 지하철 및 지역 버스 노선, 그리고 DSS/HRA가 NYCT의 컨설팅을 통해 지정한 기타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데 Fair Fares NYC 할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참여자가 이미 하나 이상의 유형의 교통 수단에서 이중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참여자는 해당 유형 또는 이중 할인을 받고 있지 않는 교통 수단 유형에 대해서만 본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b) Access-A-Ride 사용자가 아니며, NYCT가 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자는 반값 또는 승차당 요금 지불, 7일 또는 30일 요금, DSS/HRA가 향후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기타 요금 유형에 따라 요금 지불을 위해 해당 카드 할인을 사용할 수 있다.

(c) 본 프로그램의 시행은 기금 모금 가능 여부에 따른다.

§ 4.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12-03 항 하위 조항 (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Fair Fares [NYC MetroCard]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본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양식과 방식을 따라 증빙 서류를 포함해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DSS/HRA와 뉴욕시 교통 공사의 양해 각서에 따라 Fair Fares NYC 이용 약관 양식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A) 신청인은 반드시 뉴욕시 거주민이어야 한다.

(B) 신청인은 반드시 만 18~64 세여야 한다.

(C) 신청인의 [연방] 총수입은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 본 장의 12-02(a)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자는 반드시 현재 DSS/HRA나 NYCT, 기타 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중 할인 수혜 자격이 없는 자여야 한다.

(E) 지원자는 반드시 현재 본 장의 12-05(b)항에 따라 본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영구 자격 박탈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 5.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12-04 항의 하위 조항 (b) 및 (c)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 본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자가 더 이상 본 장의 12-03(a)(3)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수감되거나 기타 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해 더 이상 [카드] FF 할인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Korean

판단되는 경우, 본 프로그램은 해당 참여자에게 [FFM] FF 할인 비활성화 결정에 대한 사유와 비활성화 일자를 포함한 통지를 제공한다.

(c) 첫 해 이후 또는 연속되는 다음 해에 또는 본 항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자신의 [카드] 할인이 비활성화된 이후 본 프로그램에 재가입하려면 해당 지원자는 반드시 신규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6.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12-05 항의 하위 조항 (a) 및 (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본 [FFM] FF 할인은 이를 발급받은 참여자만 DSS/HRA 와 NYCT 의 양해각서에 따라 Fair Fares NYC 이용 약관에 의거하여 이용할 수 있다.

(b) [FFM] FF 할인의 오용이나 남용 또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카드를 제공하는 행위] 자신에게 제공된 Fair Fares 할인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저지른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1) 첫 위반 시, 해당 참여자는 60 일간 본 프로그램 이용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해당 개인은 60 일 이용 정지 조치 이후 및 본 프로그램이 정한 진술서에 서명한 후에 재지원할 수 있다.

(2) 두 번째 위반 시, 해당 참여자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한다.

§ 7.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12-06 항 하위 조항 (a)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본 장의 12-03 항 또는 12-04 항에 의거 [FFM] Fair Fares 할인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카드] 할인을 오용 또는 남용하거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개인은 해당 결정을 받은 일자로부터 14 일 이내에 본 프로그램이 정한 양식과 방식을 통해 재심의 요청을 제출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8. 뉴욕시 규정 타이틀 68 12-08 항 하위 조항 (a)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본 프로그램이 카드를 일부 교통 수단 유형에 대한 할인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하는 한, [본] 본 프로그램은 DSS/HRA 와 NYCT 의 양해 각서에 따라 이용 약관에 의거 1년(달력 연도 기준) 내에 개인당 발급할 수 있는 대체 카드의 수를 제한할 권한을 보유한다.

Korean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현장 1043(d)절에 따른

인증서/분석

규칙 제목: Fair Fares 프로그램 개정안

참조 번호: HRA-27

규정 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본인은 본 사무국에서 뉴욕시 현장 제 1043(d)절의 요건에 따라 상기 개정 제안된 규정을 분석하였음을 인정하며 상기 개정 제안된 규정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규정의 영향을 받는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작성됨
- (ii) 규정의 영향을 받는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본 규정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규정 준수 비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절감함
- (iii) 본 개정 제안된 규정은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과 관련된 처벌의 변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양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s/ Francisco X. Navarro

뉴욕시 시장 운영실

2020 년7 월21 일

날짜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현장 §1043(d)절에 따른

인증서

규칙 제목: Fair Fares 프로그램 개정안

참조 번호: 2020 RG 066

규정 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본인은 이 사무국이 뉴욕시 현장 1043(d)절에 따라 상기 개정 제안된 규정을 검토하였음을 인정하며 상기 개정 제안된 규정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법 조항을 인가받기 위해 초안이 작성되었음
- (ii) 기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음
- (iii)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좁은 범위로 결론을 도출하였음
- (iv)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정의 명확한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규정이 부과하는 요건에 대한 근거와 목적을 밝히는 진술문을 포함함

/s/ STEVEN L. GOULDEN
뉴욕시 법률 고문 대행

날짜: 2020년 7월 19일